

(04427)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임아영[6578]/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1891호

시행일자 2024. 5. 2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3041(2024. 5. 17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현 행	변 경
<p><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: 본인 확인 방법(예시) ></p> <p>▶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</p> <p>▶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</p> <p>▶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</p>	<p><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: 본인 확인 방법(예시) ></p> <p>▶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</p> <p>▶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</p> <p>▶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* 또는 본인확인서비스**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</p> <p>*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)</p> <p>**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</p> <p>▶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</p>

#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수신처 : 각 시도 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